



집세가 밀렸나요?

코로나19-때문에, 세입자들은 퇴거 당하지 않도록 8월 24
일까지 혹은, 그 이전에 집세를 갚을 기회가 있습니다.
세입자들은 여전히 집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.



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할 경우, 집
주인은 퇴거 통지서를 건네기 **60일** 전에
퇴거를 제안하는 공고문을 반드시
제공해야 합니다.



세입자는 60일 이내에 기한이 지난
집세, 수수료, 또는 임대차 계약과
관련한 기타 요금을 **전액 납부**할 수
있습니다.



집세를 내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?
다음 사이트에서 추가 자원을 얻으세요:
[AustinTexas.gov/housing-resources](https://www.austintexas.gov/housing-resources)

퇴거 위협을 받고 있나요? **1-1-3로 신고하세요**
더 많은 정보는: **AUSTINTEXAS.GOV/COVID19**에서